

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정상혁 의원의 8인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4년 12월 14일
-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규인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(2000.8.23)되어
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시내(농어촌)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
운송사업자로 명확히 구분하고(제2조, 제4조)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제87조 내지 제92조가
2000. 8. 23 삭제되면서 제41조의5 내지 제41조의 8
조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정비(제9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대중교통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규인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제87조 내지 제92조가
2000. 8. 23 삭제되면서 제41조의 5 내지 제41조의 8조항으로
신설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
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